

#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11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  
발 의 자 : 이영실, 이정인, 김혜련,  
김용연, 김소양, 김동식,  
오현정, 봉양순, 서unki,  
이병도, 김화숙 의원 (11명)

## 1. 제안 이유

- 우리나라에서 연간 1만 3,092명('16년)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, 2003년부터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음 [\* 우리나라 자살률(10만명당) 25.6명('16) \*\* OECD 평균 자살률 12.1명('17 발표)]. 자살을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생각하고, 자살에 대한 자극적 언론보도 태도 등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음.
- 그러나, '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(2011년) 및 시행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, 그리고 민간분야의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.
-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예방이 가능한 사회적 문제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사전 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. 「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

위한 조례」에 ‘자살예방의 날’ 조항을 신설하여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.

## **2. 주요 내용**

가. ‘자살예방의 날’ 조항을 신설. (안 제16조의2)

## **3. 참고 사항**

가. 관계법령 :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 2(자살예방의 날)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&lt;신 설&gt;</u>	<u>제16조의 2(자살예방의 날) 시장은</u> <u>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</u> <u>조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</u> <u>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</u> <u>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</u>